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3월 8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3월 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3년3월13일) 상정
- 제103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03년3월13일)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체육청소년과장 장용운)

□ 재정이유

- 소사국민체육센터 운영프로그램중 수영장의 월강습료(주3회 강습)를 관내 타 체육시설과 인근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비교검토하여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소사국민체육센터 수영 일반중 주3회 강습료 40,000원을 50,000원으로 하고, 청소년 주3회 강습료 35,000원을 45,000원으로 조정함(안 별표2)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강습료 인상 이유는	○ 가격이 일반수영장에 비하여 저렴하고 타 수영장의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등의 민원이 발생되어 인상하게 되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시에서 직영하더라도 타 시설과의 분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므로 강습료의 형평성을 맞춰 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나. 반대토론

- 소사국민체육센터는 신도시에 비하여 낙후된 구도심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체육센터로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하므로 수익성 보다는 시민편익을 위하여 공익성 위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수정안의 요지

-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3년 3월 18일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의안번호	제98호
의결연월일	2003.3.19 (제103회)

1. 수정이유

- 청소년의 수영장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요금을 과다하게 할 경우 이용하기에 더욱 부담이 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2. 주요골자

- 소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강습료중 청소년을 35,000원으로 수정(별표2)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표2】 중 소사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강습료중 청소년 "45,000원"을
"35,000원"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2) 육시설 연습사용료 (단위:원)					(별표2)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단위:원)					(별표2)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단위:원)							
경기 장별	사용구분	기 준	사용료		경기 장별	사용구분	기 준	사용료		경기 장별	사용구분	기 준	사용료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종합 운동장	육상장 (트랙)	1인 2시간	300	150	종합 운동장	육상장(트랙)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종합 운동장	육상장 (트랙)	1인 2시간	(개정안과 같음)				
	보조전디 구장	1인 2시간	3,000	1,500		보조전디구 장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보조전디구 장	1인 2시간	(개정안과 같음)				
시민운동장		1인 2시간	500	300	시민운동장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시민운동장		1인 2시간	(개정안과 같음)				
부천 체육관	주 경기장	1인 2시간	2,500	2,000	부천 체육관	주 경기장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부천 체육관	주 경기장	1인 2시간	(개정안과 같음)				
	보조 경기장	1인 2시간	1,000	800		보조 경기장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보조 경기장	1인 2시간	(개정안과 같음)				
송내 사회체육관		1인 2시간	1,000	800	송내 사회체육관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송내 사회체육관		1인 2시간	(개정안과 같음)				
사국민 육센터	체육관	1인2시간	1,000	800	소사국민 체육센터	체육관	1인2시간	(현행과 같음)		소사국민 체육센터	체육관	1인2시간	(개정안과 같음)				
	수영	개 인 (1인/일)	일 반 : 3,000 청소년 : 2,500 어린이 : 2,000			수영	개 인 (1인/일)	(현행과 같음)			수영	개 인 (1인/일)	(개정안과 같음)				
		회 원 (1인/월)	일 반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60,000 60,000 49,000	회 원 (1인/월)	일 반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현행과 같음) 50,000	회 원 (1인/월)	일 반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개정안 과 같음) 35,000
			청소년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50,000 50,000 35,000		청소년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현행과 같음) 45,000		청소년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개정안 과 같음) 35,000
어린이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40,000 40,000 30,000	어린이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현행과 같음)	어린이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개정안 과 같음)									
사국민 육센터	에어로빅	1인/월	45,000		에어로빅	1인/월	(현행과 같음)		에어로빅	1인/월	(개정안과 같음)						
		1인/일	2,000			1인/일	(현행과 같음)			1인/일	(개정안과 같음)						
	헬스장	1인/월	청소년35,000 일반 45,000		헬스장	1인/월	(현행과 같음)		헬스장	1인/월	(개정안과 같음)						
		1인/일	청소년 1,500 일반 2,000			1인/일	(현행과 같음)			1인/일	(개정안과 같음)						
	체즈댄스	1인/월	일 반	3회	45,000	체즈댄스	1인/월	일 반	3회	(현행과 같음)	체즈댄스	1인/월	일 반	3회	(개정안과 같음)		
			청소년	3회	35,000			청소년	3회	(현행과 같음)			청소년	3회	(개정안과 같음)		
	힙합댄스	1인/월	일 반	2회	35,000	힙합댄스	1인/월	일 반	2회	(현행과 같음)	힙합댄스	1인/월	일 반	2회	(개정안과 같음)		
			청소년	2회	25,000			청소년	2회	(현행과 같음)			청소년	2회	(개정안과 같음)		
			어린이	2회	20,000			어린이	2회	(현행과 같음)			어린이	2회	(개정안과 같음)		
	발 레	1인/월	어린이	2회	40,000	발 레	1인/월	어린이	2회	(현행과 같음)	발 레	1인/월	어린이	2회	(개정안과 같음)		
나이트 댄스	1인/월	일 반	1회	30,000	나이트 댄스	1인/월	일 반	1회	(현행과 같음)	나이트 댄스	1인/월	일 반	1회	(개정안과 같음)			
차밍댄스	1인/월	일 반	2회	35,000	차밍댄스	1인/월	일 반	2회	(현행과 같음)	차밍댄스	1인/월	일 반	2회	(개정안과 같음)			
니스장	면당	1인 2시간	1,500	1,200	태니스장	면당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태니스장	면당	1인 2시간	(개정안과 같음)				
공 도 장	1인 2시간	500	300	공 도 장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공 도 장	1인 2시간	(개정안과 같음)							
단체는 동일 소속팀의 10인 이상 축구는 팀구성 인원이 16인 이하일 때 16인으로 연습 사용료 계산 태니스장의 월 사용료는 25,000원을 징수함, 육상 경기장(트랙) 워밍업장, 보조경기장에서 초·중·고 및 도·시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은 무료(무료사용자 는 필히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되 1회 사용허가는 5일 이내로 한정) 공도장의 월사용료는 20,000원을 징수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단위:원)					(별표2)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단위:원)					
경기장별	사용구분	기 준	사용료		경기장별	사용구분	기 준	사용료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종합 운동장	육상장(트랙)	1인 2시간	300	150	종합 운동장	육상장(트랙)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보조잔디구장	1인 2시간	3,000	1,500		보조잔디구장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시민운동장		1인 2시간	500	300	시민운동장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부천 체육관	주 경기장	1인 2시간	2,500	2,000	부천 체육관	주 경기장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보조경기장	1인 2시간	1,000	800		보조경기장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송내 사회체육관		1인 2시간	1,000	800	송내 사회체육관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소사국민 체육센터	체육관	1인2시간	1,000	800	체육관	1인2시간	(현행과 같음)			
	수 영	개 인 (1인/일)	일 반 : 3,000 청소년 : 2,500 어린이 : 2,000			개 인 (1인/일)	(현행과 같음)			
			회 원 (1인/월)	일 반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60,000 60,000 40,000	회 원 (1인/월)	일 반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청소년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50,000 50,000 35,000	청소년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현행과 같음) 45,000	
		어린이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40,000 40,000 30,000	어린이	자유정기이용 주5회 강습 주3회 강습	(현행과 같음)			
	에어로빅	1인/월	45,000			에어로빅	1인/월	(현행과 같음)		
		1인/일	2,000				1인/일	(현행과 같음)		
	헬스장	1인/월	청소년 35,000 일반 45,000			헬스장	1인/월	(현행과 같음)		
		1인/일	청소년 1,500 일반 2,000				1인/일	(현행과 같음)		
	체즈댄스	1인/월	일 반	3회	45,000	체즈댄스	1인/월	일 반	3회	(현행과 같음)
			청소년	3회	35,000			청소년	3회	(현행과 같음)
	힙합댄스	1인/월	일 반	2회	35,000	힙합댄스	1인/월	일 반	2회	(현행과 같음)
			청소년	2회	25,000			청소년	2회	(현행과 같음)
			어린이	2회	20,000			어린이	2회	(현행과 같음)
	발 레	1인/월	어린이	2회	40,000	발 레	1인/월	어린이	2회	(현행과 같음)
나이트댄스	1인/월	일 반	1회	30,000	나이트댄스	1인/월	일 반	1회	(현행과 같음)	
차밍댄스	1인/월	일 반	2회	35,000	차밍댄스	1인/월	일 반	2회	(현행과 같음)	
테니스장	면당	1인 2시간	1,500	1,200	테니스장	면당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공 도 장		1인 2시간	500	300	공 도 장		1인 2시간	(현행과 같음)		
*단체는 동일 소속팀의 10인 이상 *축구는 팀구성 인원이 16인 이하일 때 16인으로 연습사용료 계산 *테니스장의 월 사용료는 25,000원을 정수함. *육상 경기장(트랙) 위빙업장, 보조경기장에서 초·중·고 및 도·시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은 무료(무료사용자는 필히 허가를 득하여 사용하되 1회 사용허가는 5월 이내로 한정) *공도장의 월사용료는 20,000원을 정수함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의 소사국민체육센터의 수영 사용란의 일반 주3회 강습란중 “40,000”을 “50,000”으로 하고, 청소년 주3회 강습란중 “35,000”을 “45,00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